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2018. 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 CONTENTS

<b>제1장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b>	02
I. 휴게시설의 정의   II. 휴게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b>제2장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b>	04
I. 휴게시설 실태조사 개요   II. 사업장 휴게시설의 문제점   III. 사업장 휴게시설 왜 필요한가?	
<b>제3장 휴게시설 관련 규정</b>	12
I. 근로기준법의 규정   II.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III.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	
<b>제4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b>	15
I.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주요내용   II. 휴게시설 설치·이용 원칙   III. 휴게시설 설치 대상사업장 IV. 휴게시설의 위치   V. 휴게시설의 규모   VI. 휴게시설의 환경   VII. 휴게시설의 설비 및 비품 VIII. 휴게시설 관리   IX.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b>제5장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b>	31
I. 옥내 휴게시설   II. 옥외 휴게시설   III. 휴게공간 설계 및 옥내디자인 주요 표준안	
<b>제6장 외국 및 다른 법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b>	37
I. 영국의 규정   II. 일본의 규정   III. 독일의 규정   IV. ILO의 권고사항 V. 건설노동자법의 규정   VI.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b>[부록] 참고자료(휴게시설 관련 질의회시)</b>	45
I. 건설업 휴게시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II. 휴게시설 설치 시 조세특례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 회시 내용	

# 제1장 |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

- I . 휴게시설의 정의
- II . 휴게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I

## 휴게시설의 정의

-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됩니다.
-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구와 비품을 갖추고 휴게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II

휴게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최근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이 규모가 작거나, 화장실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 특히, 휴게시설을 창고로 사용하거나 휴게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일 하는 사람들의 휴게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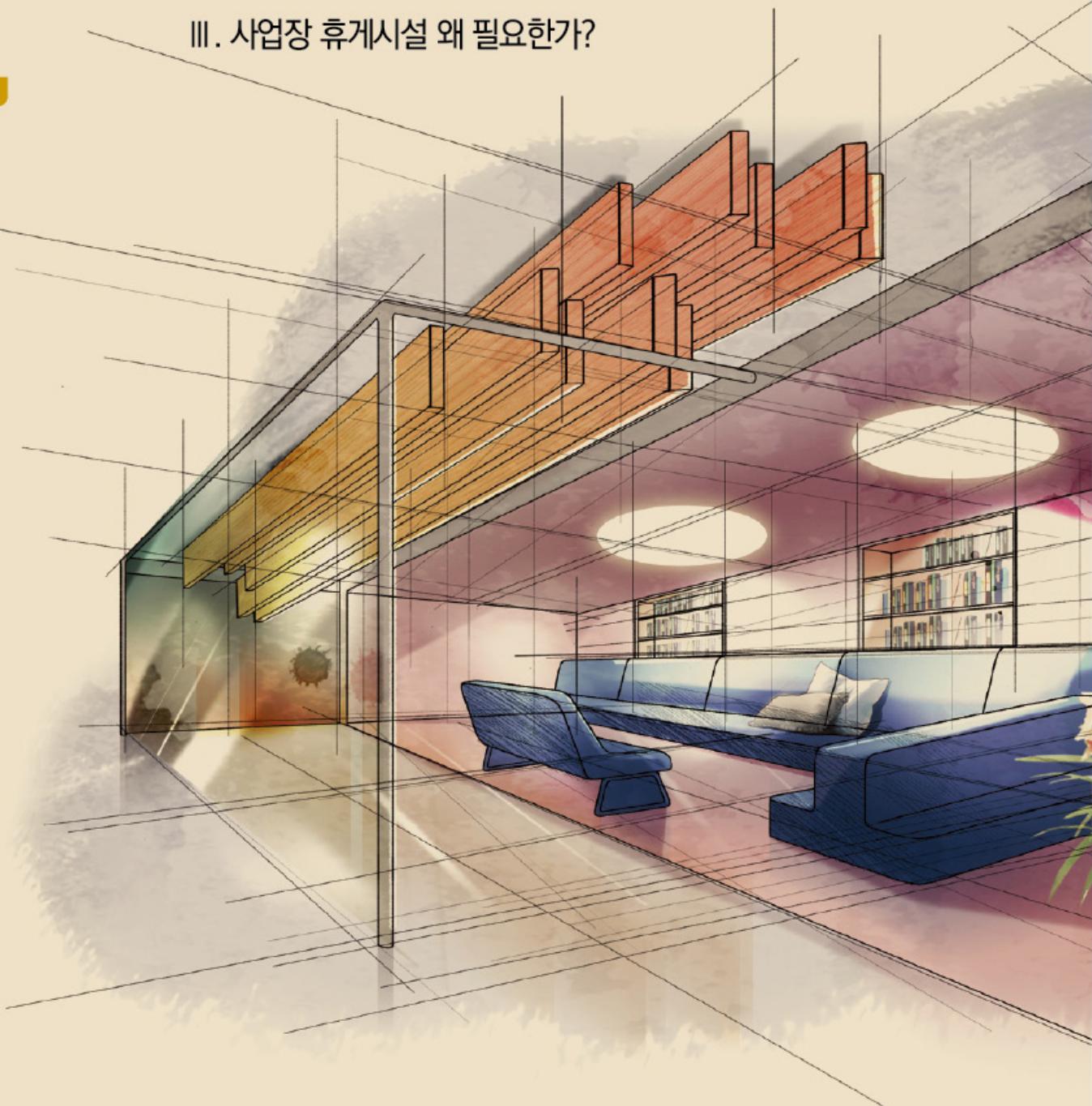
## 〈언론 보도 사례〉

- 2016. 10. 모 백화점 면세점에서 휴게시설을 매장 창고로 변경하고, 휴게시설을 폐쇄함
- 2017. 11. 인천지역 경찰서에서 청소직원들의 휴게시설이 부족하여 화장실 내부에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방치하였음



## 제2장 |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

- I . 휴게시설 실태조사 개요
- II . 사업장 휴게시설의 문제점
- III . 사업장 휴게시설 왜 필요한가?



# I

## 휴게시설 실태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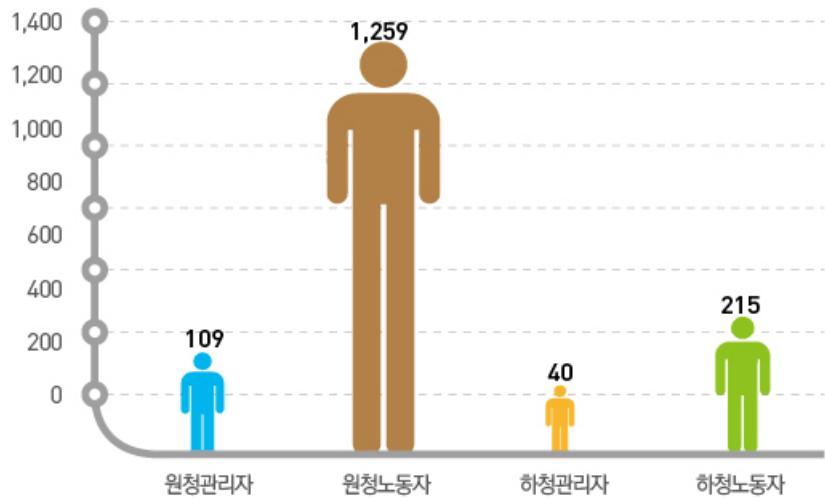
### ○ 2017년 실태조사 개요

2017 실태조사 결과, 휴게시설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는 높은 반면, 휴게시설은 부족하고 설치된 시설·비품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2017년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출처 :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조사대상(1,623명)



조사업체수(109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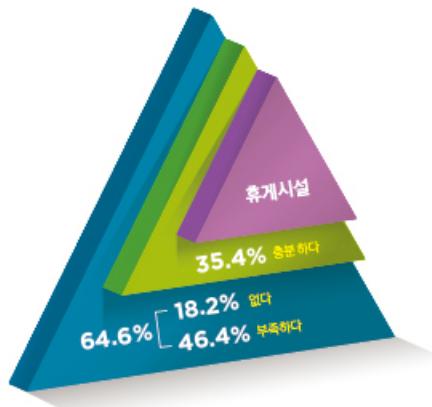


## II 사업장 휴게시설의 문제점

### 1) 휴게시설 현황 및 휴게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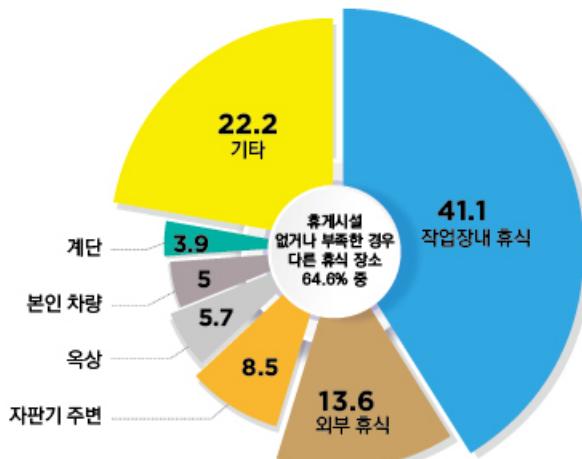
#### 휴게시설의 실태

- 실태 조사 결과,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고, 충분하다고 한 경우는 35.4%에 불과하였습니다.



####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쉬는 장소

-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64.6%)에 주로 이용하는 다른 휴식 장소는, 작업장 내 41.1%, 외부휴식 13.6%, 자판기 주변 8.5%, 옥상 5.7%, 본인 차량 5.0%, 계단 3.9%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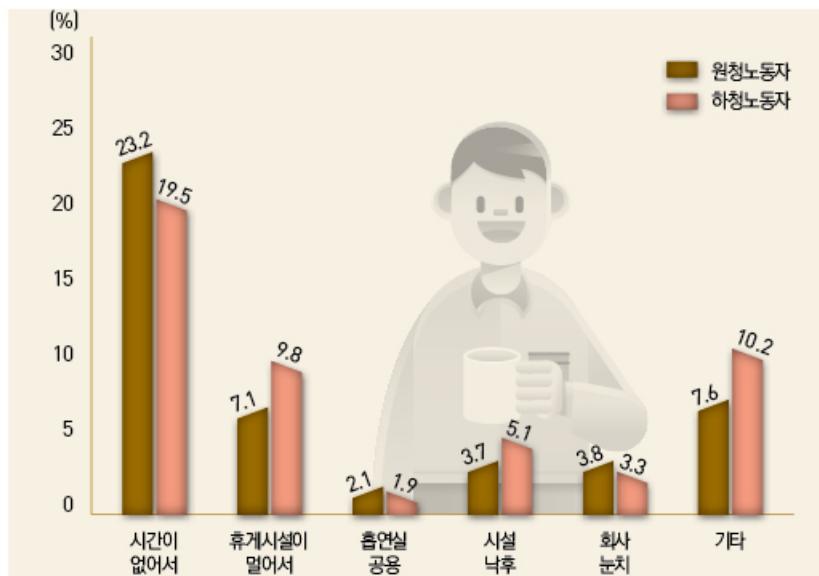
### 〈언론 보도 사례〉

- 2016. 1.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백화점이나 마트 직원들이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계단이나 좁은 공간에 종이박스를 깔고 휴식을 취함
- 2016. 4. ○○백화점에서 직원이 소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일간 휴게실을 폐쇄하였음

## 2) 휴게시설 이용시 애로사항

**휴게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다중선택, %)**

- 휴게시설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원청 47.9%, 하청 46%에 불과하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원청 30.6%, 하청 41.4%에 달하였습니다.
-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장소가 멀어서', '시설낙후' 등의 순이었습니다.



-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55.9%이며, 하청 노동자 휴게실의 경우는 63.2%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휴게시설 만족도 (5점 만점)

### 3) 휴게시설에 대한 불만족도

-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설치 비품의 미비'이고, 그 다음은 '소음 발생', '면적 불충분', '환기실태'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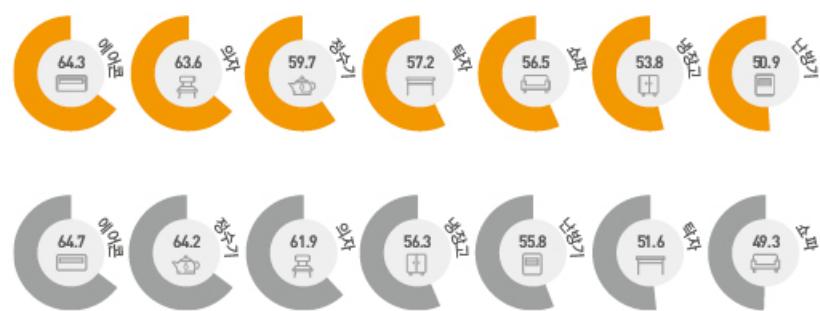
원청노동자 하청노동자



### 원·하청별 휴게시설 설치 시 필요한 비품 (다중선택, %)

- 필요한 비품으로는 원청노동자는 에어콘, 의자, 정수기, 탁자, 소파 순이고, 수급인 노동자는 에어콘, 정수기, 의자, 냉장고 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원청노동자 하청노동자



### 〈언론 보도 사례〉

- 2016. 1. ○○ 마트에서 계산원 휴게실은 독립된 공간과 다양한 편의물을 비치한 반면, 협력사원 휴게실은 물품과 공간이 열악함
- 2017. 11. 경비원의 휴게실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함

#### 4) 휴게시설 개선 필요성 및 장애요인

##### 휴게시설 개선 시 장애요인 (다중선택, 명)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주로 휴게시설 개수, 위치, 면적, 비품의 순이었고,
- 휴게시설 개선 시 장애요인으로는 '공간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비용문제', '사용자의 무관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업장 내의 공간부족, 비용문제 등 휴게시설 개선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 예산확보, 사업계획 반영 및 휴게시설 관리조직 구성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 III

#### 사업장 휴게시설 왜 필요한가?

##### 〈휴게시설 설치 시 좋은 점〉

- 과로사 등의 업무상질병 예방      ○ 졸음, 긴장 등 신체적 피로 증상 완화
-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      ○ 업무 능률 향상
- 비용 대비 편익 2.2배 증가

#### 휴게시설의 필요성

##### 1)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 (신체적 측면) 졸음·긴장 등의 피로를 해소시키고 장시간 작업, 단순·반복작업, 정밀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근골격계 긴장, 혈액 순환·소음노출장애 등 신체적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휴게시설이 없는 경우가 피로를 경험한 비율이 3.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신적 측면) 문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객과 다툼이 있었을 때 휴게 시설에서 휴식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하여 직무스트레스를 1.5배 ~ 2.1배까지 감소시켜 줍니다.

##### 2) 업무능률 향상

- 휴식을 통해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을 환기시키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업무능률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3) 사업장의 편익 증진

-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를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도 감소합니다.

- 2017년에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7년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출처 :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 제3장 | 휴게시설 관련 규정

- I . 근로기준법의 규정
- II .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 III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



## I 근로기준법의 규정

###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② 노동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위반시 처벌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 II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구 분	제 목	내 용
산업안전 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p> <p>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할 것</p>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p>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규칙 제30조의6)</p> <p>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p>

- 위반시 처벌 : 제29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III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구 분	제 목	내 용
	제79조 (휴게시설)	<p>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내 등 작업장소의 여간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제80조 (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근로자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p>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p>
	제567조 (휴게시설의 설치) ※ 고열·한랭·다습 작업	<p>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p>

# 제4장 |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 I.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주요내용
- II. 휴게시설 설치·이용 원칙
- III.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 IV. 휴게시설의 위치
- V. 휴게시설의 규모
- VI. 휴게시설의 환경
- VII. 휴게시설의 설비 및 비품
- VIII. 휴게시설 관리
- IX.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본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도움이 되는 설치·운영기준을 권고하는 것이며, 설치·이용원칙, 설치대상 사업장, 설치 위치 및 규모, 공기, 조명, 소음, 비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I

##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주요내용

### 공간

#### 위치

-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공간에서 100m 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 규모

- 1인당 면적은 의자·탁자 등을 포함하여 1㎡, 최소 전체면적은 6㎡ 확보함. 다만, 사업장 규모·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무시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 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

### 내부 환경

#### 온·습도

-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 적정온도 유지(여름 20~28℃, 겨울 18~22℃)/ 습도 50~55% 유지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예, 전기장판, 온돌 등)

#### 조명

-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Lux 내외를 권장

#### 소음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권장

#### 마감 재료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 비품 및 관리

#### 비품

-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회장지 등 비치

####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실시
-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금지

## II

### 휴게시설 설치·이용 원칙

❖ 휴게시설의 설치와 올바른 이용을 위하여 노·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1]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휴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업장 보건관리'에서 휴게시설 설치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6의3).



[2] 휴게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여 마련합니다.

○ 사업장별로 규모 및 업무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시간·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사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수급인 노동자, 입점업체 판매 노동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4] 여러 직종과 직급이 함께 사용하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배양합니다.

○ 아울러, 휴게시간이 부족한 백화점, 면세점에서 주로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는 작업공간에 비치된 의자에 때때로 앉아 쉬더라도 고객이나 상사, 동료가 양해 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5]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휴게시설 표지를 부착합니다.

[6] 휴게시설 설치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휴게시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설비 또는 간이 시설을 제공합니다.

♠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 휴게실은 특히 여성 근로자들, 업무강도가 높거나 근무시간 동안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들 혹은 근무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한다.  
 - 추위나 더위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온·습도  
 - 적절한 환기 및 조명,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

### III

#### 휴게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 휴게시설은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설치합니다.

#### 설치 의무 사업장

##### [1] 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명시된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합니다.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①항).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②항).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휴게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②항 1호).



## 사회적 요구가 높은 사업장

**[2]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요구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아래의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 세척시설 등)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동 규칙 제448조 세척시설 등)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동 규칙 제465조 긴급세척시설 등)
-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동 규칙 제502조 긴급세척시설 등)
-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동 규칙 제570조 세척시설 등)
-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동 규칙 제589조 세척시설 등)
-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취급하는 경우(동 규칙 제599조 세척시설 등)
-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 분진작업은 제외)을 하는 경우(동 규칙 제615조 세척시설 등)
- 야간작업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동 규칙 제81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
-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동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 고객·환자·승객·학생·민원인 등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업무
-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주로 서서 일하는 업무

## 기타 사업장

※ 독일의 사례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요구될 경우\* 또는 10인 이상인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시 600~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 노동 장소를 위한 기술규정(ARS) : 견디기 어려운 냄새, 과다한 육체노동, 더러운 노동, 바이오 물질 또는 유해물질 및 고객, 관객서비스 및 타사직원 면담 업무

### [3]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업장은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예방을 위해 가급적 설치합니다.

○ 다만,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서 휴식하는 동안 고객응대나 전화통화와 같은 업무로 방해받지 않고 사무공간 내에서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무공간을 휴게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독일의 사례 : 사무실이나 유사한 작업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휴식하는 동안 방문허용이나 전화통화 업무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음. 다만, 작업실에서 휴게실에서와 같이 휴식할 수 있어야 함

## 옥외장소

### [4] 건설업 등 옥외장소에서의 작업장은 아래와 같이 설치합니다.

옥외 장소에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건설현장, 조선업, 옥외청소 현장 등에도 날씨의 영향을 대비하여 난방이 가능하고, 직접 폭염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옥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텐트 및 그늘막, 간이 천막이나 이동식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작업장 인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 또는 전용 식당이 있다면 그 숙소 또는 전용 식당을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그늘막을 설치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핫별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둋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영국의 사례 : 건설업에서 작업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하루 작업에 동원되는 인원이 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 ※ 독일의 사례 : 건설현장에 숙소가 있는 경우 따로 제공하지 않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

- 휴게시설은 복리시설이므로 산업안전관리비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음. 다만,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이때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소 인근에 설치한 컨테이너, 천막등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영세 소규모  
사업장**

- [5]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휴게시설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사업장의 휴게시설 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



## IV

### 휴게시설의 위치

#### 건물 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 ❖ 휴식 시간에 효과적으로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의 위치는 작업공간과 인접한 곳에 설치합니다.

[1] 작업장이 있는 건물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불가피할 경우 작업공간에서 100m 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 다만, 건설업, 조선업 등 옥외 작업에서 크레인설치나 화재·폭발 위험 등으로 100m 이내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그 위험영향을 벗어난 가까운 곳에 설치합니다.  
※ 독일의 사례 : 휴게시설은 접근성이 편리하고, 도보로 안전하게 도달해야 하며,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 거리는 1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 작업장 층을 달리하는 경우

[2] 작업장의 층을 달리하는 경우 가급적 층마다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 다만, 각 층별 작업공간의 노동자 수가 너무 적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달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작업공간이 넓을 경우

[3] 작업공간이 넓을 경우 인원분포를 고려하여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설치합니다.

[4] 지하는 옥내공기·약취 등 환경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지상에 설치합니다.

- 특히,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위치에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5] 은행, 병원,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등 고객들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일 경우, 고객 휴게시설과 분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합니다.

- 다만, 작업공간과 분리된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한 판매직 노동자 등을 위해 작업공간에서 때때로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비치합니다.

#### 위생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6] 업무특성에 따라 위생시설(세면·목욕·세탁·탈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게시설은 가급적 위생시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합니다.

- ※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 청소노동자에 대하여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을 일체형(복합형)으로 구성

# V

## 휴게시설의 규모

❖ 휴게시설은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합니다.

### 일반 사업장

[1] 휴게시설의 규모는 1인당  $1\text{m}^2$  이상 확보하고,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하여  $6\text{m}^2$ 를 확보합니다.

- 다만,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시에 휴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시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의 적정한 면적과 숫자 등을 노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독일의 사례 : 의자·탁자를 포함하여 1인 기준으로  $1\text{m}^2$ , 최소  $6\text{m}^2$ 를 확보하여야 함



[2]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 수급인노동자를 포함하여 필요면적을 확보합니다.

### 건설업 등 옥외작업

[1]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에서 휴게시설의 규모도 가급적 1인당  $1\text{m}^2$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규모는 전체 출역인원(하도급인원 포함)과 동시 사용가능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과 개수를 정합니다.

- 고정식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진척에 따라 휴게시설의 추가 증설 또는 해체가 용이한 텐트나 휴대용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실 또는 이동식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 호주의 사례 : 오두막, 캐러밴 차량, 텐트, 방풍림 또는 휴대용 그늘막 등을 이용해 쉼터를 만들며 공공시설에서 적절한 단기 쉼터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2] 휴게실 사용시 하도급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 VI

## 휴게시설의 환경

- ❖ 옥내 휴게시설에는 조명, 소음, 실내 온·습도 및 환기시설, 마감재에 대해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 ❖ 옥외 작업장의 경우 상황에 맞게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기 바랍니다.

### 조명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1]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Lux 내외를 권장합니다.

○ 간접등이나 커튼을 설치하여 수면 시 조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 KOSHA GUIDE(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휴게실 조도의 기준을 100~200 Lux로 정하고 있음.

### 소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소음관리에 유의합니다.

[1] 휴게시설 내 소음 허용 기준은 50dB\* 이하를 권장합니다.

\* 환경소음 및 진동기준(KEPIC)

[2] 옥외 작업장의 경우, 작업의 특성상 설비 가동 등으로 인해 휴게시설 내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소음 전파가 최소화되도록 흡음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2중 구조의 출입문 등 방음구조를 권장합니다.



## 온도·습도 및 공기 질

계절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실내 온습도와 환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냉난방 설비와 환기시설을 마련합니다.

[1] 옥내 적정온도는 여름철 : 20~28°C, 겨울철 : 18~22°C가 되도록 유지하고, 실내의 적정습도는 50~55% 유지하도록 합니다.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합니다.

[2] 공기 정화작용이 있는 식물\* 또는 환기장치\*\*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설의 쾌적한 공기 질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흡연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 지하실, 기계실, 화장실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은 지양합니다.



\* 실내공기질 정화식물(예시)

선인장, 호접란, 알로에(밤에 산소배출), 스킨답서스, 산호수, 아페란드라(CO제거), 스파디필룸(아세톤, NO<sub>2</sub>제거), 테이블야자, 관음죽, 맥문동, 국화(암모니아 제거), 거베라(HCHO 제거), 아레카, 피닉스, 대나무야자, 인도고무나무, 드라세나(카펫, 벽지의 VOC 제거), 팔손이나무, 시클라멘, 하브류(향기), 벤자민 고무나무(SO<sub>2</sub>, NO<sub>2</sub>제거), 아이비(커튼, 깔개의 화학물질 제거), 산데리아나, 행운목(사무기기의 화학물질 제거), 산세베리아(CO<sub>2</sub>제거)

\*\* 환기장치(예시) : 벽부착형, 천장형, 덕트관통형, 벽관통형

※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기준 참조

[3]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설치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하되,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 특히, 여름철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합니다.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 제공된 그늘에 의자나 둋자리, 음료수대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거나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설치
- 휴게공간 내에는 시원한 물과 깨끗한 컵을 준비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1] 바닥과 벽은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합니다.

- 바닥 자재는 내마모성, 내수성, 내진성, 내화성, 내방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 예시 : 마모룸, 무석면타일, 전도성타일, 대전방지타일, 차음시트, 고탄성 바닥시트, 강화마루, 친환경마루, 코르크마루

- 벽의 자재는 내수성, 내진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 예시 : 친환경벽지, 천연벽지, 인테리어타일(인조대리석), 우드패널, 타일(기능성타일), 규조토 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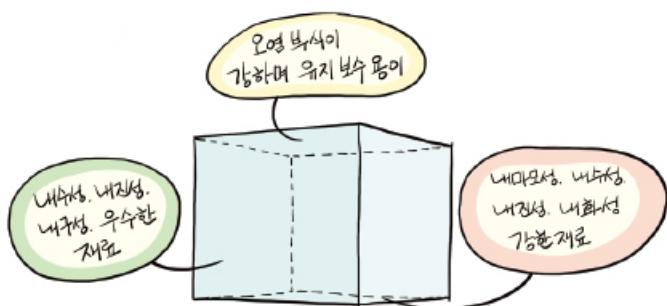
[2] 천장은 오염, 부식에 강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 천장자재(예시) : 텍스, SMC천장재, 규조토 보드마루

※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기준 참조

[3] 가급적 시각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4] 흡음성이 강하고 질감이 좋은 재료를 선택합니다.



## VII

휴게시설의  
설비 및 비품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동자에게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적정 수량 이상 비치합니다.

## 일반사업장

## [1] 가급적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합니다.

- 휴게실 바닥이 좌식일 경우 난방시설을 설치합니다.
- 야간 작업자가 있는 경우 침대, 침구류, 기타 필요용품을 비치합니다.

27

## [2] 노동자에게 필요한 비품\*을 제공합니다.

\*예시: 냉장고, 냉온풍기, 정수기, 식수, 화장지 등

※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 휴게시설에 4대 필수비품\* 비치도록 정함.

\* 환풍기 / 생활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세탁기) /  
수납가구(사물함, 신발장) / 침구류 등

## 건설업 등 옥외작업

[1] 건설업 등 옥외작업의 경우 작업복과 일상복을 분리하여 수납할 수 있는  
개인용 사물함을 비치하고, 신발장을 구비합니다.

- 앓아서 쉴 수 있는 설비(의자, 스티로폼, 둋자리)를 비치합니다.

## [2] 휴게시설 내 취사는 화재의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다만, 건설현장이나 야간근무작업 등 불가피할 경우 화재의 위험이<sup>1</sup>  
없는 전기시설과 주방시설을 제공합니다.

※ 영국의 사례 : 건설현장의 휴게 시설은 충분한 양의 탁자와 등받이 의자, 음수를  
위해 물을 가열하고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시설(가스레인지 또는 전자레인지)을  
갖추고 있어야 함.

## VIII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청소·유지·보수·관리합니다.

[1]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정합니다.

[2] 휴게시설 관리 규정\*을 마련합니다.

- 규정에는 휴게시설 이용시간, 이용방법, 설치비품, 청소·소독·세탁 주기,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업장 보건관리'에서 휴게시설 설치관련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6의3 관련).

[3] 휴게시설은 작업도구 보관함, 창고 등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흡연장소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가구 및 설비는 정상적인 기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휴게시설의 비품을 충분히 제공하고, 부족한 경우 수시로 보충합니다.

[6]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을 합니다.

[7] 정기적으로 노동자에게 휴게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합니다.



# IX

##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구 분	점검항목	그렇다	아니다
이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li> <li>• 옥외작업의 경우 여름철 그늘막 제공</li> </ul>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업공정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li> <li>• 단, 작업공정·위험환경으로부터 분리된 곳에 위치</li> <li>• 관리해야 할 공간이 큰 경우 거점별로 설치</li> <li>•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li> <li>• 지상에 위치</li> <li>• 고객 휴게시설과 별도로 직원 휴게시설 설치</li> </ul>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 공간 확보</li> <li>• 최소 전체 면적은 6㎡ 확보</li> <li>• 침대나 가구 등을 설치 시 이를 고려한 면적 확보</li> <li>• 수급인의 경우는 도급인 기업에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휴게시설 함께 사용</li> </ul>		
온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내 적정온도 유지 (권고수준-여름철 : 20~28℃, 겨울철 : 18~22℃)</li> <li>• 옥내 적정습도 유지(권고수준-50~55%)</li> <li>• 냉난방 시설 설치</li> <li>• 환기설비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질 확보</li> </ul>		
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은은한 조명 (권고수준-100~200 Lux)</li> </ul>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소음 (권고수준-50dB 이하)</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내의 소음이 휴게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li> </ul>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li> <li>• 내진성, 내마모성, 내수성, 내방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li> <li>• 쉽게 더럽혀지지 않으며, 청소하기 쉬운 재료 사용</li> </ul>		

구 분	점검항목	그렇다	아니다
가구 및 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li> <li>• 야간 작업자를 위한 침대, 침구류, 기타 필요용품 비치</li> <li>• 생활가전제품(냉장고, 냉온풍기, 정수기 등)</li> <li>• 물이나 간단한 차, 화장지, 타올 등 비치</li> <li>• 개인사물함과 신발장 구비</li> <li>•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li> <li>•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은 별도로 확보</li> <li>•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li> </ul>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li> <li>• 담당자 지정하고 매월 관리</li> <li>•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실시</li> <li>•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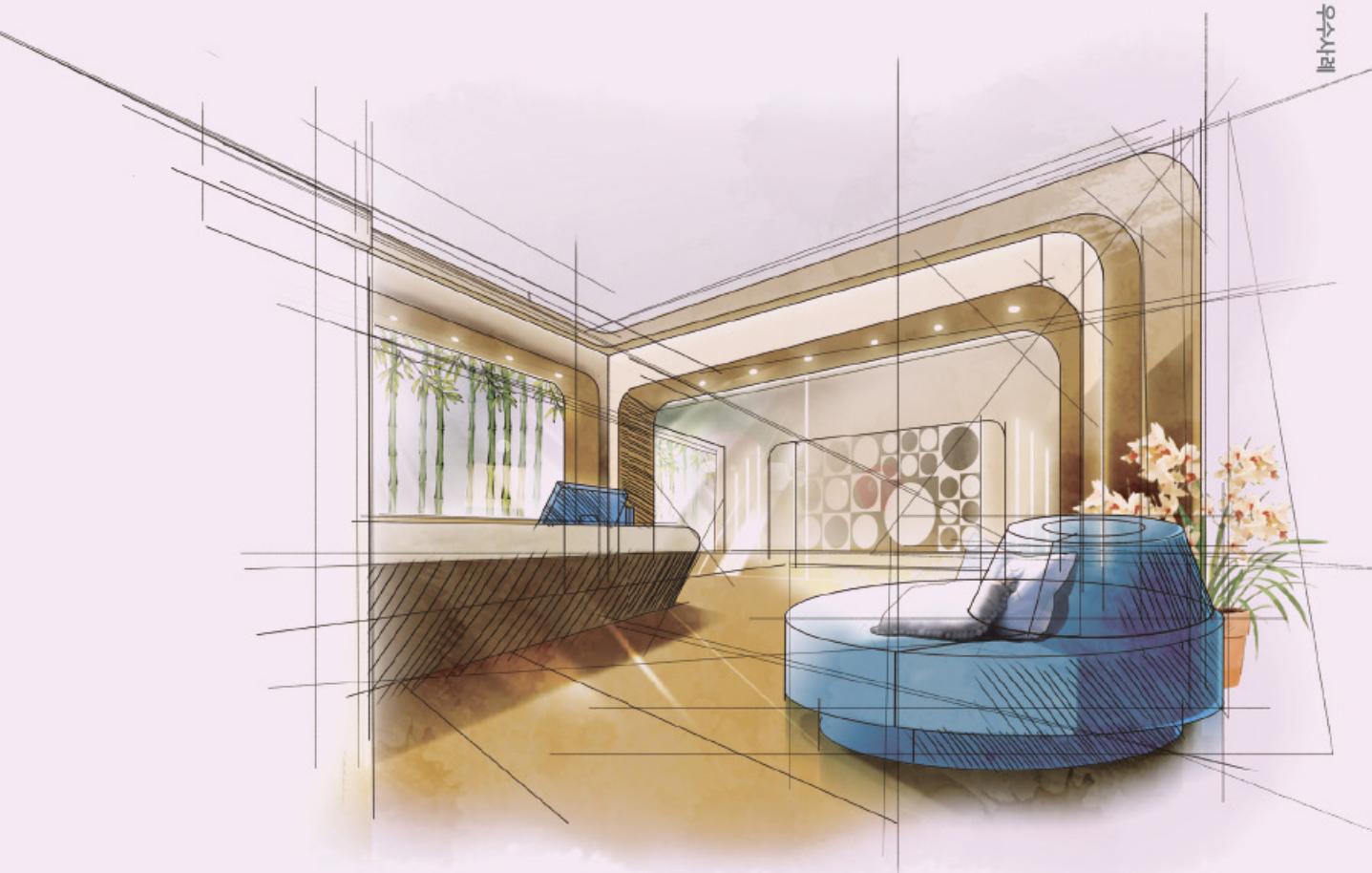
-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중 '환경', '가구 및 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정주기(일/주/월/분기 등)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할 경우 개선합니다.
- 본 가이드에서 제시한 사항은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휴게시설 설치 시 기급적 동 내용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하고, 사업장 작업 특성·인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설비를 유지·관리하기 바랍니다.



# 제5장 |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 I . 옥내 휴게시설
- II . 옥외 휴게시설
- III . 휴게공간 설계 및 옥내디자인 주요 표준안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설치 가이드〉



## I 옥내 휴게시설

### ❖ 휴게시설 이용 문화 조성

- 노·사가 협의하여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휴식시간 지키기 운동 전개
- 본사 직원과 수급인 직원 등 다양한 직종과 직급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이용 문화를 조성

### ❖ 쾌적한 휴게 환경 조성

- 심리안정 위한 아로마 공간, 신체 이완용 안마의자 제공
- 정신적 피로 저감을 위해 업무 및 개인 사정에 따른 고충을 상담하는 보듬센터 운영 및 야간 작업자를 위한 수면시설 설치·운영



※ 사진 출처 : ○○○관광개발(주)

- 심신안정 및 공기정화 기능의 식물, 휴식시간 동안 노동자 스스로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동 혈압측정기, 신체 이완용 안마의자 비치



※ 사진 출처 : ○○○후드서비스(주)

#### ❖ 독립적인 휴게공간 마련

- 남자와 여자 구분하여 휴게시설 마련·운영



※ 사진 출처 : (주)○○○텔레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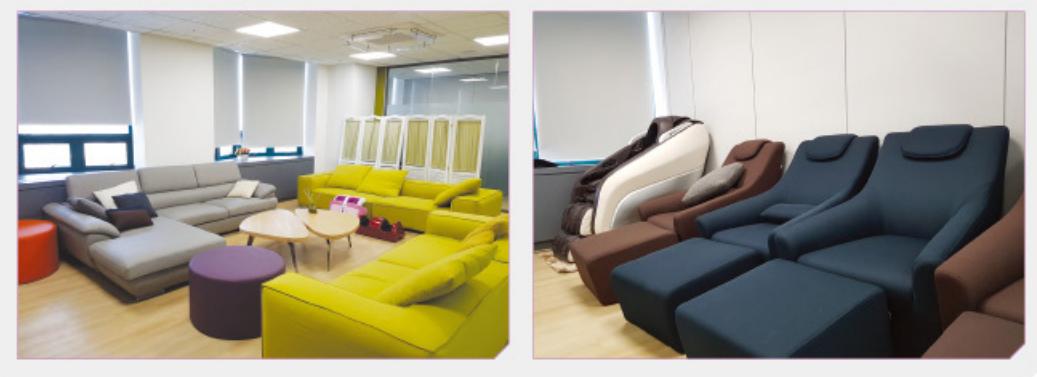
#### ❖ 가구 및 비품의 설치

- 간단한 취사 및 취식이 가능하도록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비품 제공



※ 사진 출처 : ○○○관광개발(주)

- 소파, 쿠션, 탁자 등을 이용하여 편안한 휴게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
- 안마기, 안마의자, 근골격계 증상 완화 설비 등을 비치하여 근무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 사진 출처 : (주)OO텔레서비스

## II 옥외 휴게시설

### ❖ 쾌적한 휴게 환경 조성

-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 및 신체 이완용 안마의자 제공



※ 사진 출처 : OOO후드서비스(주)

❖ 작업장과 인접한 곳에 휴게시설 설치

- 근무 중 짧은 휴식 시간에 휴식할 수 있도록 인접한 곳에 휴식 공간 설치



❖ 가구 및 비품의 설치

- 여름철 더위에 대비하여 에어컨 설치



※ 사진 출처 : (주)OO

- 휴게시설에 음용수 설치



### III 휴게공간 설계 및 옥내디자인 주요 표준안

구분	3D	평면도
실내 5인 이하		<p>5인기준 휴게공간 예시 (전체 면적 30.82㎡ / 9.3평 급배수 가능형)</p>
실내 1인 (이동형)		
실외 7인 (컨테이너형)		<p>실외형 컨테이너 5인기준 휴게공간 구성 예시(전체 면적 13.05㎡ / 3.9평) (급배수 가능형)</p>

〈출처 :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설치 가이드〉

# 제6장 | 외국 및 다른 법에서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 I. 영국의 규정
- II. 일본의 규정
- III. 독일의 규정
- IV. ILO의 권고사항
- V. 건설노동자법의 규정
- VI.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 I 영국의 규정

## 일반사업장

제6장

38

외국 및 다른 법에서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 ○ 작업장 보건안전복지 규정

[The Workplace(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 제25조 (휴게 및 식사를 위한 시설)

- 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적절하고 충분한 휴식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휴게시설은 다음을 준수한다.
  1.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신설, 확장, 전환 사업장의 경우 한 개 이상의 휴게실에 휴게 설비를 설치하고, 그 외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또는 휴게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내 식사 장소에서 오염되지 않은 식사가 가능한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휴게실 및 휴게 공간은 흡연으로 인한 불편함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 ⑤ 작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작업자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조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하급법원에서 £20,000 이하(상급법원은 벌금제한 없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원문 출처: [www.legislation.gov.uk/uksi/1992/3004/made](http://www.legislation.gov.uk/uksi/1992/3004/made)〉

## 건설현장

## ○ 건설(설계 및 관리) 규정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 부칙2 (건설현장에 필요한 최소 복지 시설)

## 제5조 (휴게시설)

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적절하고 충분한 휴게실 또는 휴게공간이 제공되거나 제작되어야 한다.

② 휴게실 및 휴게공간은 반드시 다음을 준수한다.

1. 작업자가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원수에 맞는 테이블과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갖춰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노동자가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조리와 식사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4. 끓는 물이 제공되어야 하고,

5. 적절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조항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하급법원에서 ₩20,000 이하(상급법원은 벌금제한 없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원문 출처 : [www.legislation.gov.uk/uksi/2015/51/schedule/2/made](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5/51/schedule/2/made)〉

## II 일본의 규정

### 노동안전위생규칙 (勞動安全部衛生規則)

제6장

40

외국 및 다른 법에서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 제6장 휴게

제613조 (휴게 설비) 사업자는 근로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한다.

제614조 (유해 작업장의 휴게 설비) 현저한 고열, 한랭 또는 다습한 작업장, 유해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작업장 이외 유해한 작업장의 사업자는 작업장 외에 휴게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단, 간내 등 특수한 작업장에서 이에 따를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제615조 (서서 일을 하는 작업자를 위한 의자) 지속적인 서서 일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앉을 기회가 자주 있는 편이라면 해당 사업자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자를 갖춰야 한다.

제616조 (수면 및 선잠의 설비) 야간 근무자에게 수면시간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근무자가 근무 중에 선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의 사업자는 적당한 수면 또는 수면 장소를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별해서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전 항목의 장소에 침구, 모기장,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며 질병 감염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617조 (발한 작업에 관한 조치) 다량의 땀을 흘리는 작업장의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주기 위한 소금 또는 음료수를 준비해야 한다.

제618조 (휴게실 등) 상시 5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들이 누워 쉴 수 있는 휴게실 또는 휴게소를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별해서 마련해야 한다.

〈원문 출처: [anzeninfo.mhlw.go.jp/anzen/hor/hombun/hor1-2/hor1-2-1-3h6-0.htm](http://anzeninfo.mhlw.go.jp/anzen/hor/hombun/hor1-2/hor1-2-1-3h6-0.htm)〉

### III 독일의 규정

작업장령  
(ArbStättV)

#### 부록

#### 제4조 위생, 휴게 및 대기실, 구내식당, 응급처치실 및 숙소

##### 4.2 휴게 및 대기실

(1)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안전이나 건강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휴게실 또는 적절한 휴게공간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단, 사무실 또는 유사 장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 장소에서 회복할 수 있는 등등한 조건의 휴식이 주어지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작업시간 중 대기 시간 및 작업 중단이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휴게실도 없다면, 대기 시간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노동자가 휴식시간 동안 적절한 조건 하에 누워서 휴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작업시간 중에도 가능해야 한다.

(2) 휴게실 또는 적절한 휴게 공간은 다음을 준수한다.

a) 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한 위치에 적정한 크기로 제공해야 한다.

b) 동시에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 수에 상응하는 청소하기 쉬운 탁자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갖추어야 한다.

c) 작업조건 및 작업장 평가에 따라 필요시 분리된 공간으로 설계해야 한다.

(3) 대기실로 사용하는 대기실 및 휴게실은 목적에 맞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위반 시 =€ 600~5,000의 벌금이 부과됨.

〈원문 출처: [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rbst\\_ttv/englisch\\_arbst\\_ttv.html#p0061](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arbst_ttv/englisch_arbst_ttv.html#p0061)



## IV

### ILO(국제노동기구) 의 권고사항

#### 복지시설 권고사항 (R102-Welfare Facilities Recommendation)

제6장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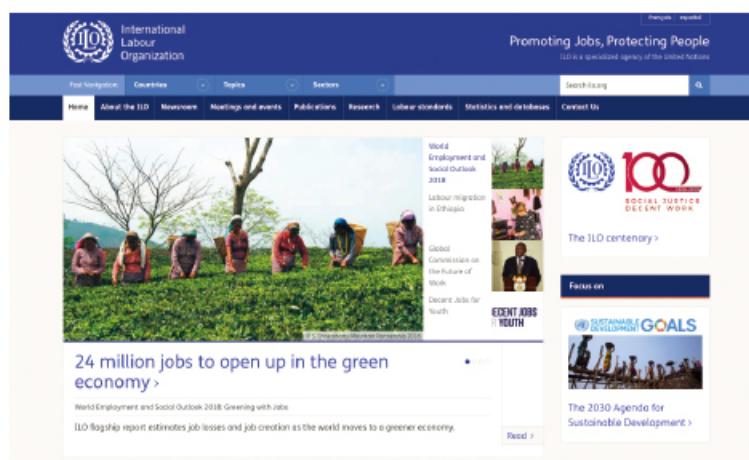
외국 및 다른 법에서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1]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업무 특성이나 기타 다른 관련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휴게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휴게실은 특히 여성 노동자들, 업무강도가 높거나 근무시간 동안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들 혹은 근무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 휴게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관계 당국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국내법 및 규정을 통해 관계 당국에 부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위나 더위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온·습도
- 적절한 환기 및 조명
-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



# V

##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구 分	제 목	내 용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과태료)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장실·식당·탈의실 설치의 세부기준은 다음 [별표]와 같습니다.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li> <li>•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li> </ul>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노동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 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li> </ul>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li> </ul>

# VI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 제6장

44

구 분	제 목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p>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p>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 휴게시설, 2. 체력단련실, 3. 사워시설 또는 목욕시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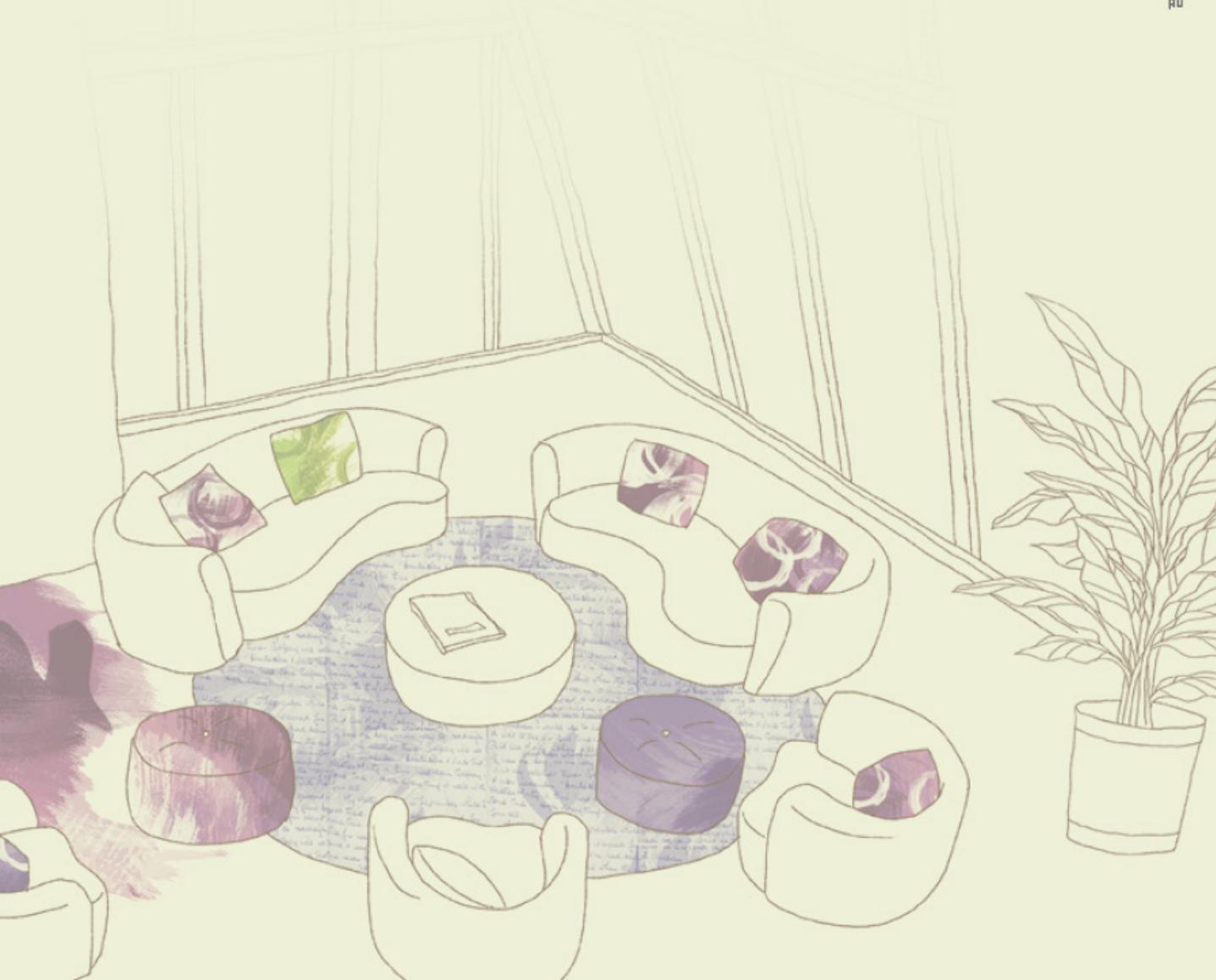
## [부록] 참고자료 (휴게시설 관련 질의 회시)

- I. 건설업 휴게시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 II. 휴게시설 설치 시 조세특례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 회시 내용

부록

45

참고자료



## I 건설업 휴게시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고시 제7조제1항제6호(노동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흑한·흑서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때의 간이 휴게시설은 숙소 또는 현장사무소, 건물 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아닌 흑한 또는 흑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 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 II 휴게시설 설치 시 조세특례에 대한 기획재정부 질의 회시 내용

### 질의

- 2016년 중에 신축하여 취득한 사무동 건물 중 일부분을 직원복지를 위한 노동자 휴게시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로 만들었음.
- 사무동 건물 안의 노동자 휴게시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노동자 복지증진 시설에 해당하는지와
- 사무동 건물 전체를 신축하면서 노동자 휴식공간 등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취득금액만을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질의함.

### 회신

- 내국법인이 사무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취득한 종업원 휴게시설, 체력단련실, 사워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 하는 것이며, 다만,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포함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관 안내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본부	044.202.7738	경기지청	031.259.02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31.0009	평택지청	031.617.9010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부천지청	032.714.8700
서울동부지청	02.403.0009	안양지청	031.463.7300
서울서부지청	02.2077.6112	안산지청	031.486.0009
서울남부지청	02.2639.2110	성남지청	031.788.1505
서울북부지청	02.950.9711	의정부지청	031.850.7713
서울관악지청	02.3281.3282	고양지청	031.931.28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10	강원지청	033.258.3562
부산동부지청	051.559.6600	강릉지청	033.650.2500
부산북부지청	051.309.1575	원주지청	033.769.0832
창원지청	055.239.6520	태백지청	033.552.8601
울산지청	052.228.3812	영월출장소	033.371.6220
양산지청	052.387.080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200
진주지청	055.752.5701	전주지청	063.240.34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45.0009	익산지청	063.839.0009
대구서부지청	053.605.9000	군산지청	063.450.0510
포항지청	054.284.7991	목포지청	061.280.0100
구미지청	054.450.3500	여수지청	061.6500.109
영주지청	054.639.11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12
안동지청	054.851.8012	청주지청	043.299.11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32.460.4500	천안지청	041.560.2800
인천북부지청	032.540.7920	충주지청	043.845.7760
		보령지청	041.931.6640

### 안전보건공단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공단본부	052.703.0642	중부지역본부	032.510.0500
서울지역본부	02.6711.2800	경기지사	031.259.7149
서울북부지사	02.3783.8300	경기북부지사	031.841.4900
강원지사	033.815.1004	경기서부지사	031.481.7599
강원동부지사	033.820.2580	경기동부지사	031.785.3300
부산지역본부	051.520.0510	경기중부지사	032.680.6500
울산지사	052.226.0510	대구지역본부	053.609.0500
경남지사	055.269.0510	대구서부지사	053.650.6810
경남동부지사	055.371.7500	경북동부지사	054.271.2014
광주지역본부	062.949.8700	경북지사	054.478.8000
전북지사	063.240.8500	대전지역본부	042.620.5600
전북서부지사	063.460.3600	충북지사	043.230.7111
전남동부지사	061.689.4900	충남지사	041.570.3400
전남지사	061.288.8700		
제주지사	064.797.7500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 발 행 일 : 2018년 7월
- 발 행 인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
-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 펴 낸 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영만  
산업보건과장 고동우  
사무관 유봉현  
전문위원 최선미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장 김현석  
작업환경부장 장경부  
작업환경부 차장 한규남  
관계 전문가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혜선
- 주 소 : (우)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 전 화 : (052) 7030-0642
- 디 자 인 : (주)한아름P&D
- Homepage : <http://www.kosha.or.kr>

2018-직업건강-417

해당 자료는 공단의 등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 편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금합니다.

2018-직업건강-417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